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5. 2 선고 2024가단10189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2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-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